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국가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진정보체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 인력 4명(5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과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8급 2명, 9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 지역 특보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범부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여

운영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하여 운영중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중 23명(6급 16명, 7급 7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직급(7급 1명, 8급 12명, 9급 10명)으로 환원하고, 지역 예·특보 생산 및 예보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 48명(7급 16명, 8급 22명, 9급 10명)의 직급을 상향(6급 16명, 7급 22명, 8급 10명) 조정하며, 기상청의 관리운영직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기술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30. ~ 1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6항제6호 중 “구축에 관한 사항”을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지진현장정보체계 구축·운영

7의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자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7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대전지방기상청의 경 우만 해당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1명”을 “2명”으로,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30”을 “428”로 하고, 일반직 계 “429”를 “427”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9”를 “78”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5”를 “116”으로 하며, 행정서
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6”
을 “35”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36”을 “434”로 하고, 일반직 계 “435”를 “433”으로 하

며,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
서기 “34”를 “33”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2”를 각각 “5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
관 1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
는 방송통신주사 8”를 신설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
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9”를 삭제하고, 기상연구사 “13”을 “12”
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16”을 각각 “515”로 하고, 행정주사·공
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3”을 “94”
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6”을 “97”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
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9”를 “128”로 하며, 행
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
송통신서기보 “98”을 “96”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10”을 각각 “509”로 하고, 행정주사·공
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4”를 “95”
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4”를 “105”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기
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3”을 “132”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9”를 “67”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환경부령 제5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환경부령 제73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환경부령 제89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환경부령 제94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0000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0000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5급 1명, 6급 1명, 8급 3명, 9급 3명, 연구사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의 정원 중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의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의 정원 중 12명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18명과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의 정원 중 10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2명과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명과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의 정원 중 1명과 행

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과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 별표 8의4의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의 정원 중 2명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3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과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별표 11]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0조 관련)

1. 제20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

2. 제20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2월 2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기상연구관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지진화산국) ① ~ ⑤ (생략) ⑥ 지진화산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국가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u><신설></u> 7. (생략) <u><신설></u> 8. ~ 13. (생략)	제9조의2(지진화산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5. (현행과 같음) 6. ----- 구축 · 운영 6의2. 지진현장경보체계 구축·운영 7. (현행과 같음) 7의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자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 13.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⑥ (생략) ⑦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u><신설></u>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13. (현행과 같음) 14.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대전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6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0조(한시정원) ①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도입에 따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수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한시정원) ①

2024년 12월 31일

치모델링센터에 둔다. ② (생 략) 환경부령 제5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의 정원 중 1명은 2023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의 정원 중 12명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 ② (현행과 같음) 환경부령 제5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중 6명은 2023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8명과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명으로 본다. ③ 별표 8의2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의 정원 중 1명은 2023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④ 별표 8의4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의 정원 중 2명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	---	--

정원 중 1명은 2023년 1월 11일 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2 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 원은 행정서기·공업서기·기 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 다.	
환경부령 제940호 기상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환경부령 제940호 기상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 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4년 8 월 9일까지 존속한다.	<삭 제>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30	428	-2
일반직 계	429	427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 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9	78	-1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5	116	+1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 ·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36</u>	<u>35</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7</u>	<u>6</u>	-1
·	·	·	
·	·	·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36</u>	<u>434</u>	-2
·	·	·	
·	·	·	
일반직 계	<u>435</u>	<u>433</u>	-2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 ·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34</u>	<u>33</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7</u>	<u>6</u>	-1
·	·	·	
·	·	·	

[별표 5]

수치모델링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52</u>	<u>50</u>	-2
일반직 계	<u>52</u>	<u>50</u>	-2
·	·	·	
·	·	·	
<u>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u> <u>·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u> <u>방송통신주사</u>	<u><신 설></u>	<u>8</u>	+8
<u>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u> <u>·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u> <u>신주사</u>	<u>9</u>	<u><삭 제></u>	-9
·	·	·	
·	·	·	
기상연구사	<u>13</u>	<u>12</u>	-1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516</u>	<u>515</u>	-1
일반직 계	<u>516</u>	<u>515</u>	-1
·	·	·	
·	·	·	
<u>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u> <u>·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u> <u>방송통신주사</u>	<u>93</u>	<u>94</u>	+1
<u>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u> <u>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u> <u>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u>	<u>96</u>	<u>97</u>	+1
<u>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u> <u>·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u> <u>방송통신서기</u>	<u>129</u>	<u>128</u>	-1
<u>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u> <u>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u> <u>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u>	<u>98</u>	<u>96</u>	-2

.	.	.	
.	.	.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10	509	-1
일반직 계	510	509	-1
	.	.	
	.	.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4	95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 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4	105	+1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 ·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3	132	-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 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9	67	-2

	.	.	.	
	.	.	.	